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23-21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3. 3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행정지원국장 분장 사무(제4조) 중 ‘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 건축물 철거’ 조항을 도시환경국장 분장 사무(제8조)로 이관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3. 2. 9. ~ 2. 2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3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5) 제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3. 3. 1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 중 “관리,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”를 “관리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4호 중 “도시디자인”을 “도시디자인,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4조(행정지원국) ① (생략)</p> <p>② 행정지원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안전정책 총괄·조정,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, 민방위, 전시 운영계획, 사회복지무요원 <u>관리</u>, <u>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</u>, 영상정보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8조(도시환경국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건축행정, 건축허가·착공·준공검사, 건축신고, 건축업자 지도감독, 위법건물 관리 총괄, 건축물 영선, 건축물관리대장 관리, 도시경관 및 <u>도시디자인</u>에 관한 사항</p> <p>4. 삭 제</p> <p>5.·6. (생략)</p> | <p>제4조(행정지원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<u>관리</u>----- 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도시환경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도시</u> <u>디자인,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</u>----- -----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|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윤지현 |
| 연 락 처 | 02-3153-8213 |